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8~16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근거 규정함(안 제3조)
- 나. 주요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사용허가와 운영·관리 위탁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이용의 제한, 이용료, 이용료 면제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노인복지법」 제37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60백만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2. 01.~12.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이하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은 거창읍 송정1길 24-15에 둔다.

제4조(주요 시설) ① 장애인복합문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2.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2. 강당, 노인건강증진실
3. 주방, 급식실
4. 프로그램실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 위탁)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합문화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2. 노인복지회관: 군에 주소를 둔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노동 집회, 상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강당	1회/4시간	50,000원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000원 가산 (음향, 조명 등의 시설 이용을 포함한다)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장애인복합문화관,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운영 예산
- 관련 조문: 제3조(설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총 비용		1,000	2,300	3,344	175	60	6,879
세출	특교	0	0	600	0	0	600
	도비	1,000	0	0	0	0	1,000
	군비	0	2,300	2,744	175	60	5,279
	소계(a)	1,000	2,300	3,344	175	60	6,879

3. 관련 의견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시설 건립비: 6,644백만원
- 집기 구입비: 175백만원
- 시설 운영비: 60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정상준